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30
----------	-------

발의연월일 : 2018. 1. 30.

발의자 : 이현승 · 박덕흠 · 임이자
정태옥 · 박맹우 · 김성원
이진복 · 김도읍 · 강석호
서청원 · 정갑윤 · 이학재
유재중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 전동차가 운행되는 승강장에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펜스 또는 승강장 안전문 설비(일명 스크린도어)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락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고상(高牀) 승강장에도 스크린도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로로부터의 수직거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승강장에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설치하도록 현행법에서 규정하여 고상 승강장에서의 추락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선로로부
터의 수직거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승강장에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25조의2(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선로로부터의 수직거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승강장에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p>